

『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』을 위한  
시유재산(임야) 대부료 면제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『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』에 필요한 시유재산(임야)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 · 한국해양연구원장으로부터 대부료면제 신청이 있어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유재산(임야) 현황
    - 위 치 : 도문동 1624-3번지
    - 지 적 : 1,861m<sup>2</sup>(지목 : 임야)
    - 재산종류 : 잡종재산
  - 대부 신청 현황
    - 신 청 인 :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 · 한국해양연구원장
    - 신청면적 : 283m<sup>2</sup>
    - 사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2011. 2월
- ※ 연간대부료(면제액) : 403,270원(283m<sup>2</sup>×28,500원×50/1000×365/365)

3. 관련법규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호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

4. 참고사항

1. 위치도 및 전경사진(별첨)
2. 관련법령(별첨) 및 대부조건
  - ※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: 2008. 9. 2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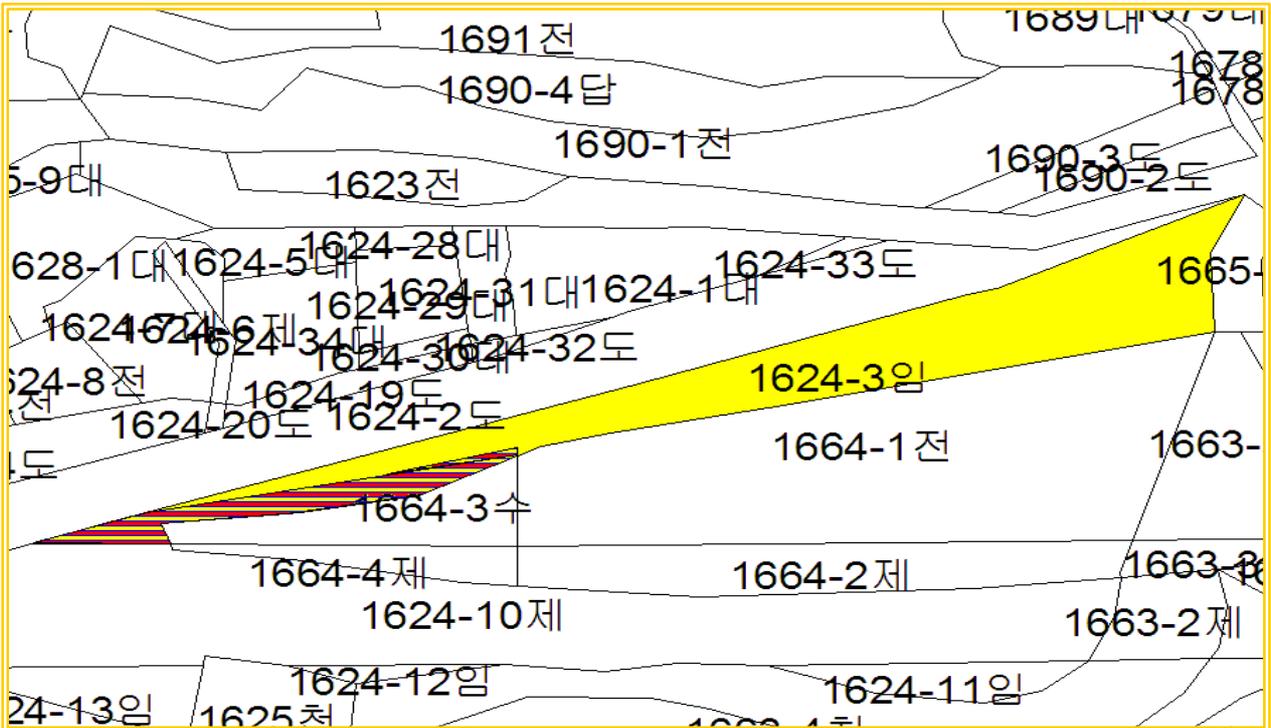
# 1. 현장사진 및 위치도

## ● 현장사진



【(구) 도문제2취수장 옆】

## ● 위치도



## 2. 관련 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장(잡종재산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(계약의 방법)

집중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 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익계약을 할 수 있으며,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, 이 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집중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

① 집중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절(대부)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(잡종재산의 대부)

①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집중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

①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